

# “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” 전부개정(안)

제정 2021. 7. 8

개정 2025. 7. 28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게 될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보수 및 수수료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, 투자자문, 투자일임 운용 등에 따라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.
  - 가. 집합투자보수 :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대가로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
  - 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
  - 다. 신탁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
  - 라. 일반사무관리보수 :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
  - 마. 투자자문보수 :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함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
  - 바. 투자일임보수 :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
  - 사. 성과보수 : 집합투자보수, 투자자문보수, 투자일임보수에 있어서 성과와 연계되어 부과된 보수

2. 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.

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및 보수 부과 기준) ① 수수료 및 보수의 부과는 각 상품 및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,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보수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1.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, 인력 및 비용
2.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
3.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
4.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
5.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, 인력 및 비용
6. 해당 상품에 대해 회사가 직·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
7. 판매회사별 예상판매 규모 및 판매촉진 계획
8. 사모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
9. 기타 판매사, 다른 수익자 등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등
10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대상 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및 투자 규모 등

제5조(투자자문·투자일임 보수 및 수수료) ①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가로 [별지1]에서 정한 투자자문·투자일임 수수료(이하 “기본 수수료”) 산정방법에 따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[별지1]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구하는 보수로서 계약일로부터 5

영업일 이내에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.

③ 성과수수료는 법98조의2와 법시행령99조의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구하는 보수로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.

④ 투자자문 계약 및 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[별지1]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한다.

제6조(투자자문·일임의 성과수수료의 수령 기준)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(이하 이 조에서 “기준지표등”이라 한다)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
나. 운용성과(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수수료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
다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라.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제7조(투자자문·일임 중도해지 수수료) ①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[별지 2] “투자자문·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”과 같다.

② 투자자의 요청으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
중도해지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투자자문·투자일임 계약의 증액 및 감액) ① 투자자문·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
②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, 수수료를 미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.

제8조(설명의무)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“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수료 고지) 법 제99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 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(보수 및 수수료 결정 절차)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유가증권 신고서·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투자자문계약·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시) 이 “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”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,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25. 7. 28)

이 기준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]

## 투자자문·투자일임 세부계약조건

1. 계약 기간 : 20\_\_년 \_\_월 \_\_일부터 20\_\_년 \_\_월 \_\_일까지
2. 계약 자산 : 금\_\_\_\_\_원
3. 거래증권사 및 계좌

증권사	계좌번호	계좌명

4. 고객/회사에 대한 통지방법(E-MAIL 기재 필수)

구 분	고객	회 사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소		
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		
<input type="checkbox"/> FAX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[필수]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참조		

5. 투자(자문·일임) 서비스 수수료(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참조)

기본수수료	계약자산가액의 1.0% ( 선취 )
성과수수료	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

6. 해지수수료(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수수료)

해지수수료	기본수수료 - [투자(자문·일임)자산 X 1.0% X (운용일수/365)]
-------	---

7. 투자(자문·일임) 담당자 :

8.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

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
1.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없음 [        ]
2.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있음 [        ]
3. 2번(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있음) 선택 시 별지를 작성한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[별지2]

## 투자자문·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

### 1. 수수료율

-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
-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(1.0)%. 다만, 동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손실이 발생한 재계약에 대한 운용보수는 최초 자본계약(Capital Commitment)에 기초
- 성과수수료는 법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결정. 단,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하이워터마크(High Watermark)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기존의 손실을 만회한 이후의 자본계약에 기초. 또한, 계약기간 중 자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, 증액 및 감액되는 자산에 대한 기준수익률은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투자자문 서비스 또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

#### ▶ 수수료율 기준

계약금액	기본 수수료	성과 수수료
고객 자산	연 (1.0)%	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

### 2. 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

- 기본수수료의 지급은 선취 일시납으로 하며 계약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, 계약 연장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
- 계약기간 중 증액이 있는 경우, 증액 금액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초기계약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고, 선취 일시납으로 증액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
- 계약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해지가 있는 경우,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환급처리
- 성과수수료 발생 시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후취 일시납으로 하며,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시점, 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지급

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수수료
기본수수료 - [투자자문재산 X 1% X (운용일수 / 365)]

### 3. 평가자산의 계산

-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입.매도가격 평가 :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계약체결일 전 영업일의 종가.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
- 기타자산 : 고객과 합의된 가격
- 미실현이익의 평가
  - ✓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(예: 공모주 등)는 편입 단가로 계산
  - ✓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 산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
  - ✓ 주식배당, 유·무상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미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

### 4. 평가자산 수익률의 계산

평가자산 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

### 5. 산정기준 등의 변경

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변경 사항 등은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